

제 1471 호
1990. 2. 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찬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 조 례
 - 제2571호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3
 - 제2572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 4
 - 제2573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개정조례 4
 - 제2574호 서울특별시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요금수조례중개정조례 10
 - 제257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10
- ◎ 훈 령
 - 제 80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14

<이면계속>

일											
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347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규정파이하사부분장규칙중개정규칙	14
◎공 고		
제 54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	15
제 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5
제 64 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효처분공고	16
제 69 호	회계관계직인폐기및등록공고	16
◎구 고 시		
제 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7
제 16 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17
◎구 공 고		
제 5 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18
제 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따른공람공고	18
제 7 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	19
제 10 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완료공고	20
제 2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20
◎사 령		
◎정 정 공 고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행정
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57호

(별표1)

행정서사업무 수수료의 기준표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행정서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의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구분	세 부 내 역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외국인 서류	· 양식외의 간단한 서류 · 사실증명,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1매	900원이하	초과분1매당 500원
문안요	· 각서, 메모증서, 위원장, 유가증권등 간단한 서류	1매	1,300원 이하	초과분1매당 700원
	· 이의서, 건의서, 진정서, 행정심판청구서, 재심청 구서, 탄원서등	1건 (2매기준)	5,600원 이하	초과분1매당 1,300원
사 류	· 단체 조합 법인 설립 폐지 사유에 관한 서류	1건	20,000원 이하	신청서 구의서류중 비 율도가산할 수 있음
	· 산업계 노동자 개인허가 신청서	1건	5,800원 이하	신청서 구의서류중 비 율도가산할 수 있음
도 면	· 간단한 도면	1매	1,000원 이하	
	· 상세한 도면(구조도, 구 획도등)	1매	2,000원 이하	
편 의	· 한글을 외국어로 서류작성 할 경우의 3배이내	외국어를 한글로 서류작성 할 경우의 3배이내		
	· 외국어를 한글로 서류작성 할 경우의 3배이내	외국어를 한글로 서류작성 할 경우의 3배이내		
사 료 요 구	· 서류제출		2,600원	외국어, 수탁비등 심 의가 소요되는 경우 그 수탁비를 가산할 수 있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회의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72호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체육진흥협회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3조중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①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계 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 제명, 제1항 및 제2항중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를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니무국장"을 "협의회업무주관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29

서울특별시장 고건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573호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지도관·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복직, 면직·부면, 해임, 정직·감봉 및 전직을 말한다.

③경찰국·소방본부와 6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 소속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용권은 경찰국장·소방본부장과 당해 사업소장이 각각 위임전결 한다.

제4조(인사기록카드) 고용직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는 정본과 부본을 작성하며, 정본은 임용기관(임용권의 위임전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사부서에서, 부

본은 근무부서에서 각각 위치·기록한다.

제5조(인사보고) ①임용권자(임용권의 위
임전결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
속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정원 및 현원의
관리를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정·현원대비표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달 3일까지 이를 시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인사통계보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사통계보고규
칙을 준용하되, 정기보고 기일 및 작성단
위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보고기일 : 분기별보고 및 반기별
보고는 분기 또는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 이내, 연차별 보고는 다음해 3월 15
일 이내

2. 작성단위기관 : 임용기관

제2장 임 용

제6조(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은
사관으로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마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증하
여야 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14세이
상 20세까지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자는 임
용일 현재 1년이상 서울특별시내 주민등
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⑤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임용
구비서류에 관하여는 일반적 지방공무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기관간 전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고용직공무원의 기관간 전보는 다음 각호
의 경우에 한한다.

- 1. 정원조정에 따른 현원 조정
 - 2. 기구개편에 따른 현원조정
 - 3. 기관간 고용직공무원의 교류 계획
 - 4. 임용권자가 고충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전보제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직위
에 임용된 날부터 6월이내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발령일) 신규임용 및 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월1일 및 15일자로 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직선 및 능력개발

제10조(검정심사기관 및 방법) ①제6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
용을 위한 검정은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방법은 서
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임
용권자는 소속6급이상 공무원중에서 2인
이상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한다.

제11조(서류전형) 서류전형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요
소별로 평정한다.

제12조(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별지 제3
호서식에 의하여 15점을 만점으로 평정요
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시
험위원의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파
관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13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연2회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14조(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23세로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과 6월사이애 속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사이애 속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15조(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6조(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파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제17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과질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정제)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

이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정제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정제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정제의결 결과에 따라 정제처분하여야 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의 정제에 관하여는 이조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의 정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인사지도 감독) 시장은 고용직공무원의 인사행정을 지도하고, 기관장 인사기준의 준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1. 임용에 관한 사항
2. 점수에 관한 사항
3. 정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준용) 이 조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해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명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해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당해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해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령시립무원청 · 원원대비료

(별지제1호서식)

연계

기 관 명	과 장	과 장 명	과 장	
			1	2
			1	2
	장	장	사	사
			이미야영	이미야영
			박부영	박부영
			김부영	김부영
			김시영	김시영
			최의영	최의영
			유의영	유의영
			김의영	김의영
			안의영	안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최의영

380mm × 268mm
(백상지 70g/㎡)

[별지제2호서식]					
서 류 전 형 평 정 표					
①점수번호			②점수년월일	년	월 일
③부 서	가.임용예정			직무구분	
	나.현 재			직무구분	
④성 명		⑤생년월일		⑥연 령 만 세	⑦성 별 남·여
⑧최종출신학교					
⑨자격및면허					
⑩경 령					
⑪담당직무의구체적내용					
⑫자격	가.소요 학 령			경 령	년 월
	나.충족 학 령			경 령	년 월
⑬평 정 요 소	평 정 기 준 점 수		평 정 점 수		
가. 학 령	10점		점		
나. 경 령	10점		점		
다. 임용예정자의연구실적	20점		점		
라. 임용직위내용의적합성	30점		점		
마. 담당직무의수행능력	30점		점		
합 계	100점		점		
⑭첨부서류	1.	4.			
	2.	5.			
	3.				
⑮비 고					
⑯평 정 연 월 일			⑰ 담 당 위 원	⑱	
비고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채점점수를 기입한다. 2. 비고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날인한다.					

(190mm×268mm 직상지 70g/㎡)

[별지 제3호서식]						
면 전 시 험 평 정 표						
①접수번호 (용시번호)		②접 수 연 월 일	년 월 일	사 건		
③임용예정 직무구분						
④성 명	(한자)	⑤생년 월일	⑥연 령	안 계	⑦성 별	남·여
	(한글)					
⑧최 종 출 신 학 교						
⑨ 담 당 직 무 의 구 체 직 내 용						
⑩ 평 정 요 소	⑪ 평 정 기 준 점 수			⑫ 합 계		
	상(3점)	중(2점)	하(1점)			
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공무 원으로서의 경신자세						점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점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점
라.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점
마. 창의력, 외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점
합 계	점	점	점	점	점	점
⑬ 비 고						
⑭ 평 정 연 월 일			⑮ 담 당 위 원			
<p>비고 1. 평정요소란은 위원이 '○'표시로 기입한다. 2. 비교란은 위원의 특별한 소감을 기입한다. 3. 평정이 완료되면 담당위원이 서명 날인한다.</p>						
(190mm×268mm. 백상지 70g/㎡)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설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 31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574호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개인연습사용료의 태능체육공원란 다음에 성동종합체육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교란중 "토, 일, 공유일은 평일의 3할가산"을 "토, 일, 공유일은 평일의 3할(골프장은 5할)가산"으로 한다.

성 제 동 육 종 시 합 설	○골프장	5000	○1라운드당
	○골프연습장	3000	○120개1상자당
	○카트	1000	○1라운드당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2. 6

서울특별시장 고 건 ⑩

◎서울특별시조례제2575호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시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별표1의 2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차장 개선작가"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중 "법 제9조 제2항"을 "법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시영주차장"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용의 제한) 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등을 정하여 공용제한 개시일의 7일전부터 공용제한 해제시까지 당해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중 "표준규격은 너비 2.0미터, 길이 5.0미터로 하되"를 "규격은 폭 2.5미터이상, 길이 5.5미터이상으로 하되"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주차장의 명칭 및 관리자의 성명, 주소"를 "관리자의 성명, 주소, 주차제한차량등"으로 한다.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의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서울특별시 또는 관시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차대수 40대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

<p>모일 것.</p> <p>2. 대상토지는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택지의되어 있을 것. 다만, 자연녹지지역에 서는 지목이 택지인 경우에 한한다.</p> <p>3. 신교노의주차장의 입구 및 출구에 접하 는 도로의 폭은 4미터이상일것. 이 경우 그 입구 및 출구의 설치장소에 관하여는 영제4 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에 산정에 있어 2단식 이상 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 의 산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2조의3제4항중 "시영주차장"을 "공영주 차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영주차장" 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p> <p>제12조의4의 제목 및 본문중 "시영주차장" 을 각각 "공영주차장"으로 한다.</p> <p>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2조의5(조입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입주차장은 당 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합한 조입주 차장을 조입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 도록하되, 그 위치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시 시장이 지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입주차장을 설 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차장이 속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 함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배치 및 출입방향등선 2. 전체주차장 평면도 및 주차등선 3. 조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배치계획도) 4. 조입주차장을 다른 주차장과 출입구등을 따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p>제1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12조의6(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등) ①영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p>	<p>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 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육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p>④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바닷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도,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 시를 할 것 <p>④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 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 장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p>다만, 전용주차장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는 별지제5호 서식 에 의한다.</p> <p>제13조제1항제2호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 및 당해 도로가 도시설계구역안인 경 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3.5미터이상의 진입로 2곳이상"을 "3.5미터 이상의 진입로 2곳이상으로 하되, 출구와 입구를 분리할 것"으로 한다.</p> <p>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④건축물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페이 터, 기타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 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제15조제1호중 "제9조"를 "법제9조"로 하고,</p>
-----------------------------------------------------------------------------------------------------------------------------------------------------------------------------------------------------------------------------------------------------------------------------------------------------------------------------------------------------------------------------------------------------------------------------------------------------------------------------------------------------------------------------------------------------------------------------------------------------------------------------------------------------------------------------------------------------------------------------------------------------------------------------------------------------------------------------------------------------------------------------------------------------------------------------------------------------------------------------------------------------------------------------------	--------------------------------------------------------------------------------------------------------------------------------------------------------------------------------------------------------------------------------------------------------------------------------------------------------------------------------------------------------------------------------------------------------------------------------------------------------------------------------------------------------------------------------------------------------------------------------------------------------------------------------------------------------------------------------------------------------------------------------------------------------------------------------------------------------------------------------------------------------------------------------------------------------------------------------------------------------------------------------------------------------------------------------------------------------------------------------------

동조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파페르 제18조제1항중 "10일"을 "20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관리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 및 그 취소와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노외주차장 용도로의 전용허가 및 신고의 수리
4.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 무면제 및 이에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부과 및 징수와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 교부
5.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업주차장의 위치 지정
6.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파징금부과처분 및 징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2]를 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색	
		바탕	글씨(교택)
공영주차장	알미늄및	녹색	흰 색
민영주차장	철판	청색	흰 색

[별지제2호서식] 및 [별지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제4호서식] 및 [별지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1회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최수권 (1일)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1급지	500	6,000	75,000	56,000
2급지	200	2,400	45,000	22,500
3급지	200	2,000	25,000	-

- 비 고 -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보통 및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정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서울특별시교통영양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원위대한조례에서 규정 한 도심지역의 주차장
 나. 2급지: 1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다. 3급지: 지하철 연계주차장 및 등 주차장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4. 1급지 노상주차장에서 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경우 30분마다 1,000원을 가산한다.
5. 최수권 및 월 정기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6.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국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득	.	.	.
이태중	지방서기관에 임함. 안강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에 보함	.	.

◎1990년 1월 31일자 5급 공무원 겸임 명 제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정환	양정과 조각계장에 겸임함.	양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2월 2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 공무원 면직 명 제5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경애	선영 의차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별정직9급상당 (전동원)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명 제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희준	지방지적기원보	영등포구	지적기원보
김춘수	.	성북구	.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명 제3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관규	성북구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승진 및 전보 명 제34호

인비 번호	성명	제 청		현 직		
		부서	직위(호봉)	부서	직위	
1	신영호	시민생활과		지방도무과	시민생활과	지방도무과
2	이재호	경찰건설본부		.	중랑구	.
3	오한수	.		.	탄천하수처리장	.
4	김광호	강동구		.	관악구	.
5	고원산	남부건설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6	이준택	치수과		.	치수과	.
7	장낙관	지하철건설본부		.	지하철건설본부	.
8	김안식	중부건설사업소		.	재개발과	.
9	김정오	남부건설본부		.	성동구	.

[별지제5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제13조의6제3항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40cm x 40cm

나. 휠체어 그림부분: 가로28cm x 세로32cm

2. 색 색

청색바탕에 휠체어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사용자의 눈높이 (100~120cm)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1990.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김 상 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훈령제80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매점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중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북부매점"란 다음에 "서울특별시 교육

위원회강서매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 칭	위 치
5.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강서매점	강서교육구청내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규칙과이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을이에공포한다.

1990. 2.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 상 준

◎교육규칙제347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규칙과이하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규칙과이하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과학기술계"다음에 "유아교육계"를 삽입한다.

제2조제2항중 "과학기술계장"다음에 "유아교육계장"을 삽입한다.

제2조제3항중 "초등교육(학령전 교육을 포함한다)"을 "초등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6항내지 제8항을 동조 제7항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유아교육계는 유치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유아원 포함)
2. 연구·시범유치원 지도
3. 시청각 교육 및 기계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사
5. 원내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p>6. 교원' 인사, 재교육,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p> <p>7. 교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p> <p>8. 교원에 대한 제증명 발급</p> <p>9. 유치원 관리운영지도</p> <p>10. 원칙변경에 관한 사항</p> <p>11.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p> <p>제2조제9항(중전의 제2조제8항)제1호중 "유치원"을 삭제한다.</p> <p>제3조제4항제7호 및 동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제5호의 학교의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p> <p>8. 제5호의 사립 기급학교의 예산·결산</p>	<p>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p> <p>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p>공 고</p> </div> <p>◎서울특별시공고제54호</p> <p>제2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p> <p>전기공사업법 제29조2항3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종 공사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 29</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고 건</p>				
<p>- 아 래 -</p>					
면허번호	업종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사유
제 1212 호	일성에너지㈜	박덕근	신사동 585-13	영업정지 2월 '90. 1. 25~ '90. 3. 24	전기공사업법 제29조 2항 3호

<p>◎서울특별시공고제56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고시제666호('78. 12. 18)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적 승인된 성북동길(성북국교앞)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p> <p>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할 것 이나 미수행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갈음 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가. 공람장소: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p> <p>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 30</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사업시행지: 성북동65-8-성북동 65-3간</p> <p>2) 사업의종류 및 명칭: 성북동길(성북국교앞) 확장공사</p> <p>3) 사업의규모: 도로확장 폭=30m, 연장=200m</p> <p>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p> <p>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1- '91. 12. 31</p>
-----------------------------------------------------------------------------------------------------------------------------------------------------------------------------------------------------------------------------------------------------------------------------------------------------------------------------------	----------------------------------------------------------------------------------------------------------------------------------------------------------------------------------------------------------------------------------------------------------------------------------------------------------------------------------------


<p>6) 수용 또는 사용할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별첨</p> <p>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조3항의 관계인주소·성명 : 별첨</p> <p>8) 기타사항 :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서울특별시공고제64호 제2종전기공사업면허실용처분공고</p> <p>전기공사업법 제3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2종 전기공사업체가 실용되었기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2</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고 권</p>
---------------------------------------------------------------------------------------------------------------------------------------------------------------------	---------------------------------------------------------------------------------------------------------------------------------------------------------------------------------------------------------------------------

- 아 리 -


면허번호	업제명	대표자	소재지	적분내용	사유
제 941 호	동양전력(주)	서창균	역삼동 797-22 205호	실 효	전기공사업법 제30조 제3항

<p>◎서울특별시공고제69호 회계관계직인 폐기 및 등록공고</p> <p>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89. 11. 1 대통령령 제12633호)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3조 7조</p>	<p>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폐기 및 등록하였기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2. 5</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 고 권</p>
--------------------------------------------------------------------------------------------------------------------------------------	-------------------------------------------------------------------------------------------------------------------------------------------------------------------------

직 인 등 록 조 서

회 계 명	일반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인 영</div> 
관 서 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직 명	서울특별시 생활체육과 분임골프출납원	
사 용 개 시 일	1990. 2. 5	

직 인 폐 기 신 고 시

회 계 명	일반회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auto;">인 영</div> 
관 서 명	서울특별시 건전생활과	
직 명	서울특별시 건전생활과 분임골프출납원	
사 용 기 간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2월 4일까지	

구 고 시

◎**동대문구고시제4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62호('89. 12. 29)로 도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된 우리 구 관내 이문동 105-10~휘경동 산6-35

간 도로의 1개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20
동 대 문 구 청 장

아 래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유형	번호	규모(㎡)	위 치	변 경 내 역
기정	대로	3	40	B=25 L=11,210	군자동~수유동	
변경	대로	3	40	B=24-38 L=11,210		*선형 및 폭원변경 · 이문동 105-10 ~ 휘경동 산 6-35간 - B=25m → 24-38m - L=960m · 이문동105-10~이문동 93-3간 B=25m → 24-25m, L = 130m · 휘경동5-1~휘경동 116-5간 B=25m → 31m, L=120m · 휘경동65-5~휘경동산6-35간 B=25m → 25-38m L=300m
기정	대로	3	129	B=25 L=870	휘경동산 6-35 ~이문동 94-1	
변경 (폐지)				0		동부고속화도로와 중복되어 폐지

나. 고시도면 : 생략

◎**서초구고시제16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허가

1. 건설부 허가 30262-25189('88. 12. 21) 호로 개포지구 택지개발 실시계획 변경승

인시 연구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면 연곡동 304번지 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518호('89. 12. 27)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청취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 및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30.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영광동 304번지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
다. 사업의 규모
단위로


대 지 면 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용 도	비 고
14,810.8 중 10,025	2,546.18	13,255.34	연구시설 (학습의관)	건물 3동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99-1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일재
 마. 사업예정기간: 착공년월일-1990. 1. 준공예정일-1992.12.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생략)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 설계도 생략 -

◎성동구공고제5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폐기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도사업특별회계회 공무원 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90. 1
 성 동 구 청 장
 가. 직인명: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임직을원나. 폐기일: 1989. 11. 21
 다. 직인폐기인

구 공 고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수도사업비 특별회계	폐기당시 인영 
문 서 명	성동구청장	
직 명	수도사업특별회계 분임경리관	
사용기간	1989년 11월 21일부터	

◎서대문구공고제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따른공람공고
 1. 우리구 관내 서울의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에 따른 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2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을때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1. 29
 서 대 문 구 청 장

사업의명칭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공람기간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 서울외국인학 교 교사숙소 증축	안희동 55-1 일대	교사숙소 증축(기존) 3층위 1개층 증축 연면적 : 675.36㎡	재단법인 서울의국인 학교 유지재단이사 고 일 선	'90. 1. 29 -'90.2.12

◎강동구공고제7호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실시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594호('89. 10. 26)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89.11.)
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조성
계획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
지 공원조성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독서실의 7개시설) 시행허가에 앞서 도시
계획법 제25조의 2 및 특별시행령 제27조
의 2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
람하고 있으며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서
는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 공 랑 요 지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62번지
2. 사업의종류 및 명칭: 명일근린공원 부분 조성 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부지면적 14,485㎡
공원시설 설치면적 6,798㎡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목동 171-27 남상교
5. 사업확수일 및 준공예정일: 허가일로부터 '91. 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조서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첨조서
8. 공람장소: 강동구청 공원녹지과
9.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 2

강 동 구 청 장

사 용 또는 수 용 할 토 지

1. 사용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용 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 동구 상일동	산 62	임	14,485	서울시 강동구 목동 171-27	남상교의 1인

2. 수용토지: 없음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제43조3항의규정에의한관계인주소·성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 용 자	
				주 소	성 명
서울시 강 동구 상일동	산 62	임	14,485	서울시 강동구 목동 171-27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3-18	남 상 교 이 찬 영

◎송파구공고제10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완료공고

1. 강동구 고시 제25호('87. 7. 29) 및 송파구 고시 제72호('88. 12. 23)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허가된 가락로 지구획정리사업 205-1보통에 대하여 사업

완료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의 2및 제8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90. 1. 30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완료내역

시행허가 근 거	사 업 시 행 지	사업의 종류 명 칭	사업의 시행 면적 (㎡)	건 축 면적(㎡)	건 축 면적(㎡)	사 업 시 행 자
강동구 고시 제25호 ('87. 7. 29)	송파구 가락로지구 획 정리사업 205-1보통	도시계획사업 (여객자동차정 류장)	4,066	330	990	성동구 자양동 590-5 신동로동 699정선원의 1인
송파구 고시 제72호 ('88. 12. 23)	"	"	"	400.8	1,751.93	"

나. 준공도면 : 별첨(생략)

◎은평구공고제2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 제195호('77. 6. 22)로 지적승인된 진관내동 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0. 2. 3
은 평 구 청 장
- 공 략 개 요 -
가. 사업명 : 진관내동-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나. 위 치 : 진관내동 410의 8-진관내동 410의 6간
다. 사업규모 : 도로확장 B=20m,
L=160m(도로)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9-'
'91. 12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사 령

◎1990년 1월 31일자

기능직 공무원 면직

병 제25호

성 명	할 행 사 람	연 부 과	서 기
박 양 순	원 에 의 하여 그 직을 면함	총 부 과	지행사무보조원시보 (조무기능직10등급)

◎1990년 1월 30일자		4급공무원 승진임용		령 제2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송현섭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상수도 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팔당수원지 사무소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토목기과	
시승일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종합건설본부 조경부장에 보함.	종합건설본부	-	
강창구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양천구 건설국장에 보함.	양천구	-	
양영규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성북구	-	
윤봉훈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영등포수원지 사무소장에 보함.	상수도사업본부	-	
전희상	지방시설기계에 임함. 동대문구 도시정비국장에 보함.	동대문구	지방건축기과	
이강윤	지방임업기계에 임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시설과장에 보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지방임업기과	
박수환	지방공업기계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근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사무소장에 임함.	상수도사업본부	지방기계기과	
인사발령통지				령 제28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교육원 교수부 행정사무관 서기관에 임함.			손흥구	'90. 1. 30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심사분석담당관 지방서기관 서기관에 임함.			김순적	'90. 1. 30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심사분석담당관에 보함.				'90. 1. 30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계획과 5급상당 원예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김재철	'90. 1. 30
			대봉명	

◎1990년 1월 30일자		4월경무원 승진임용		별 제29호
성 명	발 행 사 항	관 부 지	과 직 급	
진 익 율	지방서기관에 임함. 법무담당관에 포함.	법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임 재 오	지방서기관에 임함. 전산담당관에 포함.	전산담당관		
감 상 돈	지방서기관에 임함. 주차계획담당관에 포함.	주차계획담당관		
김 문 수	지방서기관에 임함. 노원구 건설국장에 포함.	노 원 구		
채 승 기	지방서기관에 임함. 공무원교육원 기획과장에 포함.	공무원교육원		
양 기 서	지방서기관에 임함.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사무과장에 포함.	한강공원관리 사 업 소		
권 혁 모	지방서기관에 임함.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과전 ('90. 1. 30 - '90. 11. 30)	내 무 국		
최 명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지방자치추진반)			
이 보 규	지방서기관에 임함. 기획담당관(국회연락담당)			
김 총 환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이 창 희	지방서기관에 임함. 성북구 건설국장에 포함.			
이 점 관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가로정비추진담당관)			
이 준 표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난지도대형관)			
이 계 효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박 경 만				
강 철 실				
임 재 건				
박 승 희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상국	지방서기관에 임함. 내무국 근무를 명함.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김영득	.	.	.
이배창	지방서기관에 임함. 안강공원관리사업소 관리과장에 보함	.	.

◎1990년 1월 31일자 5급 공무원 겸임 명 제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황정환	양정과 조각계장에 겸임함.	양정과	지방행정사무관

◎1990년 2월 2일자 지방별정직 9급상당 공무원 면직 명 제5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경애	선영 의차여 그 직을 면함.	경찰국 면허과	별정직9급상당 (전동원)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명 제3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희준	지방지적기원보	영등포구	지적기원보
김춘수	.	성북구	.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명 제3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관규	성북구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사보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승진 및 전보 명 제34호

인비 번호	성명	청				현			
		부서	직위(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신영호	시민생활과		지방토목기사	시민생활과		지방토목기사보		
2	이재호	경찰건설본부		.	중랑구		.		
3	오한수	.		.	탄천하수처리장		.		
4	김광호	강동구		.	관악구		.		
5	고원산	남부건설사업소		.	상수도사업본부		.		
6	이준택	치수과		.	치수과		.		
7	장낙관	지하철건설본부		.	지하철건설본부		.		
8	김안식	중부건설사업소		.	재개발과		.		
9	김정오	남부건설본부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원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0	이 동 명	도로계획과		지 역 방 투목기사	시정계획과		지 역 방 투목기사보
11	김 만 식	관악구		"	동작구		"
12	이 성 태	중랑구		"	강서구		"
13	한 판 구	중랑구		"	도봉구		"
14	서 승 재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5	김 기 려	종합건설 본부		"	종합 건설본부		"
16	탁 범 구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
17	이 영 민	중랑구		"	종합 건설본부		"
18	강 동 인	은평구		지 역 방 투목기사보	강서구		지 역 방 투목기사보
19	최 진 선	도봉구		"	복 건설사업소		"
20	이 장 선	종합건설 본부		"	동작구		"
21	원 방 희	동대문구		"	동대문구		"
22	정 정 태	도봉구		"	도봉구		"
23	백 경 철	성북구		"	송파구		"
24	고 태 건	치수과		"	중랑구		"
25	김 길 남	송파구		"	송파구		"
26	하 진 수	중랑구		"	중랑구		"
27	이 성 영	관악구		"	관악구		"
28	장 석 호	용산구		"	용산구		"
29	성 선 주	종합건설 본부		"	중랑구		"
30	임 규 삼	강서구		"	강서구		"
31	이 갑 수	서대문구		"	영등포구		"
32	최 용 순	성북구		"	도봉구		"
33	조 병 준	성동구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조 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4	성 인 환	구로구		지 방 토목기사보	구로구		지 방 토목기원
35	신 건 권	영등포구		.	강 서 구		.
36	최 호 진	중로구		.	중 로 구		.
37	박 승 오
38	황 경 환	송파구		.	관 천 해수처리장		.
39	권 을 순	영등포구		.	영 등 포 구		.
40	전 광 호	송파구		.	중 구		.
41	김 용 평	바포구		.	구 로 구		.
42	이 봉 진	산정구		.	서 구 건설사업소		.
43	박 기 용	.		.	서대문구		.
44	양 회 구	동작구		.	양 천 구		.
45	김 배 식	노원구		.	노 원 구		.
46	김 용 식	동대문구		.	동 대 문 구		.
47	조 인 호
48	박 상 태	마포구		.	건 설 자재시험소		.
49	마 정 식	양천구		.	양 천 구		.
50	이 현 휘	관악구		.	관 악 구		.
51	이 재 류	지 하 철 건설본부		.	지 하 철 건설본부		.
52	김 광 수	강남구		.	중 구		.
53	홍 희 선	강동구		.	동 작 구		.
54	김 호 식	중 구		.	중 구		.
55	김 영 호	중 합 건 설 본 부		.	남 산 공 원 관리(사)		.
56	박 차 감	관악구		.	동 작 구		.
57	최 수 용	중랑구		.	중 랑 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업 적		
		부 서	과 목 (호 분)	과 목	부 서	과 목	과 목
58	윤영민	중 구		지방토목 기사보	용 산 구		지방토목 기관
59	최태규	중로구		"	"		"
60	신경섭	서초구		"	중 구		"
61	김양수	성북구		"	노원구		"
62	금상철	건설자재 시업소		"	동대문구		"
63	황상연	동작구		"	관악구		"
64	안기정	하수처리과		"	강동구		"
65	정광수	도봉구		"	도봉구		"
66	김학현	동작구		"	동작구		"
67	김재하	중로구		"	중로구		"
68	배신기	"		"	은평구		"
69	김수인	중랑구		"	양천구		"
70	이학규	관악구		"	서초구		"
71	오영극	동부건설 사업소		"	성동구		"
72	나종학	북부건설 사업소		"	중로구		"
73	이남구	성동구		"	동대문구		"
74	김승태	동작구		"	용산구		"
75	장명식	영등포구		"	영등포구		"
76	김병렬	서대문구		"	서대문구		"
77	심재주	도봉구		"	도봉구		"
78	박윤국	마포구		"	보라매공원 관리(사)		"
79	안병학	도봉구		지방토목 기사보	중랑구		지방토목 기관보
80	정종석	건설자재 시업소		"	동대문구		"
81	박범정	성동구		"	성동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원 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82	이 경 복	성 동 구		지 토 무 기 방 위 원	성 동 구		지 토 무 기 방 위 원 보
83	송 용	동대문구		"	동대문구		"
84	이 영 식	성 북 구		"	성 북 구		"
85	김 영 훈	구로구		"	마 포 구		"
86	김 정 수	도봉구		"	노 원 구		"
87	송 순 규	강 동 구		"	동 작 구		"
88	김 락 연	구로구		"	구 로 구		"
89	최 광 두	구로구		"	동 작 구		"
90	최 상 원	은평구		"	동대문구		"
91	이 순 경	영등포구		"	영등포구		"
92	정 영 희	성 동 구		"	성 동 구		"
93	김 판 현	양 천 구		"	양 천 구		"
94	구 철 희	종 로 구		"	종 로 구		"
95	전 영 기	구로구		"	중 구		"
96	지 승 현	도봉구		"	도 봉 구		"
97	장 용 원	도봉구		"	도 봉 구		"
98	이 기 춘	영등포구		"	영등포구		"
99	권 희 대	관악구		"	성 북 구		"
100	최 병 태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01	이 수 근	구로구		"	동 작 구		"
102	원 기 호	중 구		"	중 구		"
103	김 기 용	중랑구		"	중 랑 구		"
104	박 종 갑	서대문구		"	서대문구		"
105	김 영 식	관악구		"	관 악 구		"

인미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수)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06	권 오 중	동대문구		지 토목기원	상 부 구		지 토목기원보
107	오 수 양	관천하수 처리장		"	관 천 하수처리장		"
108	박 창 수	구로구		"	서 초 구		"
109	육 덕 천	관악구		"	강 서 구		"
110	정 동 락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11	한 상 곤	서대문구		"	서 초 구		"
112	성 종 국	성북구		"	성 북 구		"
113	최 창 순	용산구		"	용 산 구		"
114	임 진 평	성동구		"	강 동 구		"
115	박 병 수	동부건설 사업소		"	성 동 구		"
116	정 현 석	마포구		"	마 포 구		"
117	최 남 호	서부건설 사업소		"	중 구		"
118	이 구 선	마포구		"	마 포 구		"
119	박 정 태	남지하수 처리장		"	남 지 하수처리장		"
120	김 승 태	영등포구		"	영 등 포 구		"
121	백 여 선	남부건설 사업소		"	양 천 구		"
122	김 발 현	중 구		"	중 랑 구		"
123	김 재 경	성동구		"	성 동 구		"
124	강 성 구	성동구		"	송 복 구		"
125	윤 여 국	종로구		"	종 로 구		"
126	김 동 곤	영등포구		"	영 등 포 구		"
127	임 상 용	성동구		"	중 랑 구		"
128	도 기 설	도봉구		"	도 봉 구		"
129	이 정 원	성북구		"	노 원 구		"

인사 번호	성명	정			현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30	김종운	구로구		지토목기 토목기원	구로구		지토목기 토목기원보
131	송석호	동대문구		.	송파구		.
132	송준철	은평구		.	은평구		.
133	이경복	동작구		.	동작구		.
134	정병우	성동구		.	송파구		.
135	박태희	중구		.	북부 건설사업소		.
136	이동훈	중구		.	중구		.
137	소철호	동대문구		.	강남구		.
138	김동운	서초구		.	서초구		.
139	김승훈	성동구		.	중랑구		.
140	김명진	마포구		.	마포구		.
141	심제업	구로구		.	구로구		.
142	구성철	구로구		.	.		.
143	김윤배	은평구		.	은평구		.
144	이영국	성동구		.	성동구		.
145	문정수	마포구		.	강서구		.
146	이상돈	관악구		.	서초구		.
147	박종환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48	차우현	도봉구		.	도봉구		.
149	윤광희	동대문구		.	성북구		.
150	이문규	성북구		.	.		.
151	이광천	성북구		.	노원구		.
152	장옥정	성동구		.	중랑구		.
153	한홍태	양천구		.	한강관리 사업소		.

인비 번호	성 명	제			원		
		부 서	직 위 (보 통)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154	김 영 일	마포구		지 토목기원	마포구		지 토목기원보
155	강 광 용	종로구		"	서대문구		"
156	박 영 불	서초구		"	서초구		"
157	송 명 근	종로구		"	종로구		"
158	태 창 식	도봉구		"	도봉구		"
159	강 도 모	구로구		"	구로구		"
160	이 명 수	중랑구		"	건설자 제 시 업소		"
161	신 성 근	안양하 차 터 장		"	남부 사 업소		"
162	이 린 영	강동구		"	강남구		"
163	장 성 용	강남구		"	"		"
164	이 삼 주	동작구		"	동작구		"
165	정 수 석	도봉구		"	도봉구		"
166	백 남 석	도봉구		"	"		"
167	김 만 재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68	조 현 철	북부 사 업소		"	북부 사 업소		"
169	이 창 민	서초구		"	서초구		"
170	이 상 배	중랑구		"	종합 본 건 설 부		"
171	박 부 열	송파구		"	서대문구		"
172	박 병 준	구로구		"	송파구		"
173	임 병 훈	구로구		"	구로구		"
174	김 우 승	종로구		"	은평구		"
175	김 주 선	은평구		"	양천구		"
176	이 경 재	중랑구		"	중랑구		"
177	변 민 근	관악구		"	영등포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계 위 (호 별)	계 급	부 서	계 위	계 급
178	김 상 수	시 초 구		계 방 포목기원	시 초 구		지 방포목 기 원 본
179	김 환 수	노 원 구		"	동대문구		"
180	주 양	중로구		"	동부건설 사업소		"
181	한 종 수	성동구		"	중랑구		"
182	왕 완 근	서대문구		"	서대문구		"
183	박 종 서	양천구		"	양천구		"
184	김 주 백	중로구		"	중로구		"
185	김 영 호	양천구		"	양천구		"
186	김 경 숙	마포구		"	마포구		"
187	태 형 기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	서부건설 사업소		"
188	오 수 용	강동구		"	강동구		"
189	조 성 주	은평구		"	은평구		"
190	심 희 원	은평구		"	서부건설 사업소		"
191	조 방 휘	마포구		"	마포구		"
192	강 경 식	중랑구		"	노원구		"
193	임 호 백	송파구		"	송파구		"
194	박 상 구	서부건설 사업소		"	양천구		"
195	최 희 면	중랑구		"	중랑구		"
196	이 장 일	성동구		"	성동구		"
197	류 재 천	동대문구		"	동대문구		"
198	최 용 국	관악구		"	관악구		"
199	서 귀 동	노원구		"	도봉구		"
200	이 용 성	용산구		"	용산구		"
201	임 병 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포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포목기사보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02	권 오 석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03	김 한 경	"		"	"		"
204	김 광 호	"		"	"		"
205	홍 성 구	"		"	"		"
206	김 윤 식	"		"	"		"
207	김 광 용	"		"	"		"
208	황 인 배	"		"	"		"
209	이 경 규	"		"	"		"
210	노 덕 환	"		"	"		"
211	김 관 식	"		"	"		"
212	이 형 로	"		"	"		"
213	양 원 식	"		"	"		"
214	유 재 철	"		"	"		"
215	이 중 완	"		"	"		"
216	이 중 천	"		"	"		"
217	장 관 호	"		"	"		"
218	채 병 철	"		"	"		"
219	김 인 중	"		"	"		"
220	류 연 환	"		"	"		"
221	이 승 현	"		"	"		"
222	김 형 선	"		"	"		"
223	주 계 식	"		"	"		"
224	최 명 우	"		"	"		"
225	이 희 영	"		"	"		"

인비 번호	성명	계정			현직		
		부서	직위 (호봉)	직급	부서	직위	직급
226	권오식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27	정윤식
228	김무한
229	임종진
230	최경호
231	박필용
232	정환모
233	홍수희
234	이돈복
235	이명윤
236	김환식
237	정석영
238	박재원
239	백인기
240	백운길
241	김백
242	문영출
243	정종근
244	김종재
245	이병창
246	허부용
247	최환용
249	오수원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한 력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50	정 훈 삼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251	신 동 호	"		"	"		"
252	나 태 산	"		"	"		"
253	김 정 효	"		"	"		"
254	박 준 기	"		"	"		"
255	이 상 흥	"		"	"		"
256	박 채 윤	"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		지방수도 토목기사원
257	김 동 훈	"		"	"		"
258	김 달 희	"		"	"		"
259	심 상 후	"		"	"		"
260	김 인 환	"		"	"		"
261	류 주 열	"		"	"		"
262	최 현 태	"		"	"		"
263	조 관 호	"		"	"		"
264	경 윤 영	"		"	"		"
265	오 태 명	"		"	"		"
266	경 윤 상	"		"	"		"
267	노 영 석	"		"	"		"
268	송 기 만	"		"	"		"
269	신 규 식	"		"	"		"
270	조 성 진	"		"	"		"
271	안 영 록	"		"	"		"
272	심 작 근	"		"	"		"
273	윤 용 승	"		"	"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74	고 명 권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
275	박 종 우	"		"	"		"
276	최 철 수	"		"	"		"
277	노 대 원	"		"	"		"
278	임 덕 수	"		"	"		"
279	서 경 선	"		"	"		"
280	이 동 관	"		"	"		"
281	원 의 모	"		"	"		"
282	김 학 무	"		"	"		"
283	김 시 행	"		"	"		"
284	윤 기 복	"		"	"		"
285	경 제 성	"		"	"		"
286	김 동 주	"		"	"		"
287	오 왕 근	"		"	"		"
288	남 후 원	"		"	"		"
289	박 성 남	"		"	"		"
290	조 창 호	"		"	"		"
291	김 준 식	"		"	"		"
292	고 재 연	"		지방수도 토목기원	"		지방수도 토목기원보
293	한 승 희	"		"	"		"
294	김 태 복	"		"	"		"
295	조 남 인	"		"	"		"
296	김 석 권	"		"	"		"
297	임 원 길	"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정			행 직		
		부 서	직 위 (호 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298	강 동 철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	상 수 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원보
299	최 광 주	"		"	"		"
300	김 명 수	"		"	"		"
301	박 혁 순	"		"	"		"
302	최 상 운	"		"	"		"
303	이 선 제	"		"	"		"
304	남 정 렬	"		"	"		"
305	박 치 규	"		"	"		"
306	김 도 설	"		"	"		"
307	김 갑 진	"		"	"		"
308	김 효 상	"		지 방 방 화공기원	상 수 도 사업본부		지 방 화공 기 원 보
309	류 재 영	양 천 구		"	양 천 구		"
310	이 제 성	송 파 구		"	송 파 구		"
311	서 진 식	상 수 도 사업본부		"	상 수 도 사업본부		"
312	김 형 섭	"		"	"		"
313	권 혁 준	영등포구		지 방 방 지회기원	영등포구		지 방 지회 기 원 보
314	김 춘 수	성 부 구		"	성 부 구		"
315	진 창 열	송 파 구		"	송 파 구		"
316	홍 형 표	강 동 구		"	강 동 구		"
317	김 경 민	종 로 구		"	종 로 구		"
318	김 홍 균	관 약 구		"	관 약 구		"
319	송 새 범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20	김 경 희	중 구		"	중 구		"
321	김 항 수	서 초 구		"	서 초 구		"

인비 번호	성 명	청			직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22	박 태 준	동라구		지방 지적기원	동라구		지방지적 기원보
323	김 성 욱	강서구		"	강서구		"
324	현 제 환	강남구		"	강남구		"
325	김 기 식	마포구		"	마포구		"
326	정 덕 순	성북구		"	성북구		"
327	김 기 중	용산구		"	용산구		"
328	박 휘	중 구		"	중 구		"
329	이 용 국	서초구		"	서초구		"
330	최 민 음	양천구		"	양천구		"
331	안 흥 기	구로구		"	구로구		"
332	노 진 수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33	박 상 영	중랑구		"	중랑구		"
334	김 명 수	송파구		"	송파구		"
335	박 수 영	은평구		"	은평구		"
336	김 민 규	강동구		"	강동구		"
337	서 미 연	중랑구		"	중랑구		"
338	김 해 경	강동구		"	강동구		"
339	김 형 구	서대문구		"	서대문구		"
340	이 립 중	강남구		"	강남구		"
341	조 현 희	도봉구		"	도봉구		"
342	조 종 파	도봉구		"	"		"
343	김 영 상	동대문구		"	동대문구		"
344	차 미 영	관악구		"	노원구		"
345	박 희 영	동대문구		"	동대문구		"

인비 번호	성 명	지 칭			현 직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46	손 문 호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기사보
347	정 계 현	용산구		지방도 토목기사	"		지방 토목기사
348	명 민 식	동작구		"	"		"
349	황 인 기	중랑구		"	"		"
350	김 선 증	관악구		"	"		"
351	이 계 철	성동구		"	"		"
352	김 순 일	중 구		"	"		"
353	양 힘 남	노원구		"	"		"
354	조 수 창	도봉구		"	"		"
355	조 순 현	치수과		"	"		"
356	한 석 창	구로구		"	"		"
357	윤 철	장남구		"	"		"
358	김 학 수	마포구		"	"		"
359	김 정 배	하수처리과		"	"		"
360	송 치 윤	강서구		"	"		"
361	황 의 태	주북개량과		"	"		"
362	안 병 식	도토계획과		"	"		"
363	김 경 기	도토시정과		"	"		"
364	홍 기 창	북부건설 사업소		"	"		"
365	이 종 규	강동구		"	"		"
366	이 광 석	도토계획과		"	"		"
367	정 혁 규	송파구		"	"		"
368	황 영 도	은평구		"	"		"
369	서 철 호	치수과		"	"		"

인비 번호	성 명	계 청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분)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70	황 종 화	은평구		지 방 토목기사	상수도 사업본부		지 방 토목기사
371	김 성 도	용인구		"	"		"
372	이 진 우	서대문구		"	"		"
373	이 용 대	중 합 건설본부		"	"		"
374	심 재 흥	"		"	"		"
375	유 길 상	감 사 1 담당		"	기술심사 담당		"
376	오 천 균	강 동 구		"	주 계 담당		"
377	김 영 복	중 합 건설본부		"	도 계 회 과		"
378	소 득 수	"		"	치 수 과		"
379	전 삼 화	중 구		"	중 로 구		"
380	정 성 국	관 약 구		"	중 구		"
381	홍 사 인	양 천 구		"	도 봉 구		"
382	김 정 봉	도 봉 구		"	은 평 구		"
383	채 수 훈	마 포 구		"	서 대 문 구		"
384	이 동 환	강 남 구		"	마 포 구		"
385	윤 무 지	강 서 구		"	구 로 구		"
386	김 영 철	서 대 문 구		"	관 약 구		"
387	박 명 숙	중 구		"	"		"
388	류 희 상	공 원 과		"	강 남 구		"
389	김 판 기	서 초 구		"	동 부 건 설 사 업 소		"
390	박 영 태	영 류 포 구		"	남 부 건 설 사 업 소		"
391	김 창 재	중 로 구		"	북 부 건 설 사 업 소		"
392	조 재 범	구 로 구		"	한 강 공 원 관 리 (사)		"
393	윤 수 길	송 파 구		"	중 합 건 설 본 부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요 불)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394	정 근 모	기술심사관 담당자			서 초 구		지 투 목 기사
395	진 석 우	건설자재소 건설협력			중 건설본부		"
396	서 성 기	하수처리장 관리			"		"
397	김 권 수	중차량차 관리			"		"
398	정 준 영	강 동 구			영 동 포 구		"
399	김 성 모	토 계 회 파			성 동 구		"
400	장 인 규	영 동 포 구			구 토 구		"
401	장 남 구	양 천 구			도 시 설 회		"
403	이 상 동	강 동 구		시 방 투 목 기 사 보	강 남 구		지 방 투 목 기 사 보
404	한 형 록	관 악 구			중 건설본부		"
405	임 중 범	중 건설본 과			도 계 회 파		"
406	홍 동 표	"			송 파 구		"
407	김 정 동	남부건설 사업소			동 작 구		"
408	류 택 상	건설자재소 건설협력			중 건설본부		"
409	이 재 철	중 건설본 부			동 대 문 구		"
410	류 성 근	"			용 산 구		"
411	이 현 정	구 토 구			동 작 구		"
412	배 광 환	차 수 파			"		"
413	이 석 원	중 건설본 부			성 동 구		"
414	구 교 윤	한천하수 처리장			송 파 구		"
415	김 원 철	안양하수 처리장			영 동 포 구		"
416	남 창 우	재 개발과			공 원 과		"
417	이 민 태	하수처리 장			안양하수 처리장		"
418	조 성 길	중문회 파			중 건설본 부		"

인비 번호	성 명	계			현		
		부 서	직 위 (호 불)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19	장 영 각	동 작 구		지방토목 기사보	서 초 구		지방토목 기사보
420	김 인 점	도 봉 구		"	상 수 도 사업본부		"
421	박 능 선	강 동 구		"	"		"
422	황 두 식	마 포 구		"	"		"
423	이 제 승	중 랑 하 수처리장		"	"		"
424	전 용 완	서대 공용원		"	"		"
425	송 영 배	중 랑 하 건설본부		"	"		"
426	구 현 모	주 개 탕과		"	"		"
427	김 경 래	서부 건설소		"	주 개 탕과		"
428	김 동 수	강 동 구		"	종 로 구		"
429	이 승 진	도 계 회과		"	용 산 구		"
430	기 순 식	영 동 포 구		"	성 동 구		"
431	오 순 천	중 랑 하 건설본부		"	동 대 문 구		"
432	정 진 오	남 지 하 수처리장		"	성 부 구		"
433	이 용 선	중 랑 하 건설자재 시합소		"	"		"
434	신 도 수	영 동 포 구		"	은 평 구		"
435	이 명 균	중 랑 하 건설본부		"	"		"
436	송 철 호	서부 건설소		"	서 대 문 구		"
437	권 병 찬	도 계 회과		"	마 포 구		"
438	이 석 재	동 작 구		"	구 로 구		"
439	신 용 수	도 계 회과		"	"		"
440	아 두 석	은 평 구		"	영 동 포 구		"
441	주 복 기	"		"	"		"
442	조 의 형	구 로 구		"	동 작 구		"

인비 번호	성 명	계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부)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43	한 석 철	성 품 구		지방토목 기사 보	강 동 구		지방토목 기사 보
444	송 재 훈	관 약 구		"	"		"
445	권 형 전	시 계 설 회 과		"	중 합 건설본부		"
446	박 문 수	동 작 구		"	"		"
447	백 동 현	구 토 구		"	"		"
448	박 문 식	관 령 라 수 차 의 장		"	"		"
449	류 광 영	치 수 과		"	건설 자 계 시 업 소		"
450	장 용 구	도 토 회 계 과		"	동 부 건설 사업 소		"
451	임 광 빈	기 술 실 사 담 당 관		"	서 부 건설 사업 소		"
452	이 의 만	중 건설 합 본 부		"	도 봉 구		"
453	김 영 훈	성 복 구		"	중 합 건설본부		"
454	최 경 태	은 평 구		"	"		"
455	우 남 직	용 산 구		"	"		"
456	정 택 진	남 산 공 원 관 리 사 무 소		"	"		"
457	이 윤 주	동 작 구		"	"		"
458	이 춘 봉	용 산 구		지방토목 기사 보	도 봉 구		지방토목 기사 보
459	박 용 우	"		"	중 합 건설본부		"
460	김 나 진	북 부 건설 사업 소		"	도 봉 구		"
461	김 석 년	송 파 구		"	성 동 구		"
462	박 대 진	"		"	"		"
463	염 기 창	중 로 구		"	"		"
464	김 부 철	중 방 구		"	성 복 구		"
465	김 계 진	성 품 구		"	은 평 구		"
466	정 태 승	중 구		"	"		"

인비 번호	성 명	제 청		현 직			
		부 서	직 위 (호 불)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67	채 이 균	양 천 구		지방토목 기	서대문구		지방토목 기
468	이 경 구	"		"	구로구		"
469	김 흥 안	영동포구		"	"		"
470	손 마 중	성 동 구		"	"		"
471	고 봉 회	강 서 구		"	관악구		"
472	김 준 표	동 과 구		"	"		"
473	김 윤 중	양 천 구		"	"		"
474	이 해 중	서대문구		"	서부건설 사업소		"
475	정 해 성	중 랑 구		"	북부건설 사업소		"
476	전 철 규	보라매공원 관리사업소		"	마포구		"
477	최 경 수	건설자재 시험소		"	성 동 구		"
478	이 상 현	안양하수 처리장		"	종 로 구		"
479	최 규 영	동대문구		"	성 동 구		"
480	염 종 윤	은 평 구		"	중 랑 구		"
481	방 효 만	건설자재 시험소		"	노 원 구		"
482	전 승 진	중합건설 부		"	강 동 구		"
483	최 영 희	"		"	양 천 구		"
484	배 석 동	동부건설 사업소		"	성 동 구		"
485	이 계 수	녹사 사업소		"	종 로 구		"
486	경 재 현	중 랑 구		"	강 남 구		"
488	이 상 복	종 로 구		지방토목 기원보	성 복 구		지방토목 기원보
489	김 석 환	서 초 구		"	강 동 구		"
490	이 형 목	관악구		"	용 산 구		"
491	이 윤 권	송 파 구		"	성 동 구		"

인비 번호	성 명	재 정			현 직		
		부 서	직 위 (호봉)	직 급	부 서	직 위	직 급
492	권복철	용산구		지방토목 기원보	성동구		지방토목 기원보
493	조한광	"		"	"		"
494	한상권	도봉구		"	"		"
495	이의범	성동구		"	동대문구		"
496	국중진	"		"	"		"
497	박동규	도봉구		"	성북구		"
498	최병인	용산구		"	"		"
499	김태현	"		"	안양구		"
500	김귀룡	서대문구		"	"		"
501	김장덕	"		"	"		"
502	김완규	도봉구		"	서대문구		"
503	고석종	관악구		"	구로구		"
504	김용희	"		"	"		"
505	박홍규	용산구		"	영등포구		"
506	허영열	관악구		"	"		"
507	류관식	영등포구		"	관악구		"
508	박춘배	동작구		"	"		"
509	김호익	성동구		"	강동구		"
510	박중섭	건설자재 시험소		"	"		"
511	정준용	북부건설 시험소		"	노원구		"
512	우진택	송파구		"	마포구		"
513	강철규	서초구		"	서대문구		"

◎1990년 2월 8일자		6급공무원 전입		령제 35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경희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산림청	행정주사	
최재욱	부자관리담당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청부전자계산소		
변몽일	관계과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총무처 감사관실		
◎1990년 2월 3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령제 38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용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2호에 의거 감봉1월에 처함	중합건설본부	지방건축기사보	
김용백	불관경고(서울시 제2인사 위원회의 의결사항)	수도사업본부	지방건축기사	
◎1990년 2월 5일자		6급이하 공무원 전보		령제 37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창진	성동구	양천구	지방행정주사	
한덕연	도봉구	치수과	"	
김상집	서울시립대학교 파견 (90. 2. 5. - 91. 2. 4.)	강남구	지방행정서기	
도용기	중합운동장관리사업소	종로구	"	
송해선	노원구	동작구	지방행정서기보	
이용준	운수 1과	"	지방행정서기	
◎1990년 1월 1일자		6급이하 기술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령제 496 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정환	지방임업기원보	성동구	임업기원보	
이기성	"	동대문구	"	
이종환	"	"	"	
김민권	"	성북구	"	
김은종	"	도봉구	"	
김계현	"	"	"	
윤명중	"	은평구	"	
김남현	"	"	"	

성명	발령사망	현부서	직급
이광원		서대문구	
최영희		마포구	
정종복		영등포구	
강안환		장남구	
최병인		동대문구	
임병욱		도봉구	
이승용		마포구	
김계영	지방기계기원보		기계기원보
박영택			
김규용			
유병기	지방기계기원		기계기원

서울특별시

①1990년 2월 1일자 **별정직 공무원 편직** 형제 8 호

인비번호	성명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박정호	원예 외하여 그 직을 면함			김포수원지		지방별정직 8급상당

별정직 공무원 전보 형제 9 호

인비번호	성명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박정호	김포수원지		지방별정직 7급상당	산규		

기능직 공무원 전보 형제 10 호

인비번호	성명	부서	직위	직급	부서	직위	직급
1	황병식	서부수도사업소		지방운전원 (10급상당)	중부수도사업소		지방운전원 (10등급)
2	고진해	서부파강동수도사업소		"	"		"
3	박송일	강동수도사업소		"	"		"
4	박우철	동부수도사업소		"	"		"
5	최창수	강남수도사업소		"	"		"
6	노병배	북부수도사업소		"	"		"
7	김중택	은평수도사업소		"	"		"

정 정 공 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시보1466호 인사명령 제497호(1990년1월1일자)
 659번 파동권을 박중권으로 정정공고합니다.

[별지 제 2 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김 진 현 (金珍顯)	소 속	내무국 대기
	본 적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62-66	직 명	지방행정주사보
	주 소	서울 은평구 불광2동 170-66		

출석 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 년 2 월 13 일 14 시 00 분

출석 장소 사정 기뢰상황실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거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중지합니다.

1990 년 1 월 30 일

서울특별시제 2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적					
	주 소					

199 년 월 일 사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 2 호서시)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성 명	김 식 영 (金錫英)	소 속	내무국 대기
			직 명	지방화공기원
사 본 거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나촌리 255번지			
항 주 소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주공아파트 43동 409호			
출석 이유				
심문 및 진술				
출석 일시				
1990 년 2 월 13 일 14 시 00 분				
출석 장소				
시청 기획상황실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포기서를 불응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개최 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예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0 년 1 월 30 일

서울특별시제 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소 속		직 명	
	본 거					
	주 소					

199 년 월 일 시에 개최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9 년 월 일

성 명

㉑

서울특별시제 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